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231
----------	------

2013년 7월 12일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3년 2월 22일, 김명수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2월 2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13년 7월 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서울특별시의회 김명수 의원)

- 현재 우리나라는 2009년 1,125명, 2010년 1,023명, 2011년 916명으로 매년 약 1,000명의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을 보내고 있음. 출산률의 저하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입양가정의 지원을 강화하여 해외입양을 줄일 수 있게 된다면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 생각함.
- 국내입양이 저조한 것은 입양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재정적 어려움이 주된 이유인데, 「입양특례법」을 통한 양육수당 지원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활성화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며, 이를 위하여 입양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안함.

- 주된 내용은 제3조에서 시장은 입양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도록 하고,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입양 축하금으로 1명당 100만원, 장애아동의 경우 1명당 200만원, 입양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교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양재대)

가. 제정안 개요

- 본 제정안은 보호대상아동의 해외 입양을 억제하고 국내입양을 촉진시키기 위한 여건 조성 및 보호대상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돕는 것을 규정하려는 것임.
- 제정안은 총 제13조의 본칙 조항과 2개의 부칙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입양가정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의 조문 배열〉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시장의 책무)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제5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범위)
 제7조(지원대상자 안내)
 제8조(지원 신청)
 제9조(지원절차)
 제10조(지원금의 환수)
 제11조(홍보)
 제12조(권한의 위임)
 제13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제2조(적용례)

나. 조례안 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 제정안은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입양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마련을 위한 것으로, 다음의 측면에서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수용 가능한 측면이 있음.
 - 우선, 일반적으로 요보호아동 중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아동은 입양되거나 아동양육시설에 입소 조치되어지나,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 측면에서보면 아동양육시설 입소보다는 입양이, 해외입양보다는 국내입양이 좀 더 바람직하다 할 것임.
 - 또한, 입양되는 요보호아동 중 국내입양 비율이 '06년 이전까지는 41% 이하였으나, '07년 보건복지부의 해외입양쿼터제 등 국내입양활성화대책 이후 국내 입양이 꾸준히 증가하여 '12년에는 60%를 넘어서고 있고(별첨자료1. 연도별 입양 현황), '12년 8월에 개정·시행중인 「입양특례법」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내 입양 우선 추진(제7조1)) 및 국외입양 감축(제8조2))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볼 때, 본 제정안은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입양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이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할 것임.

- 다만, 이 제정안이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포함하고 있는바,
 - 이를 이유로 아동의 입양을 경제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등 의도가 불순한 입양 및 입양 후 조기 파양 가능성 등의 우려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또한, 입양축하금 등 예산 지원을 수반함에 따라(연평균 약14억 7,000만원) 시의 재정부담 능력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어짐(별첨자료2. 예산추계서).
 - 그리고 현재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가운데 10개 자치구에서는 입양가정 지원을 위한 자체 조례를 제정하여 입양축하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바(별첨자료3. 자치구별 입양 지원 조례 현황), 이 조례

1) 「입양특례법」 제7조(국내입양 우선 추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의뢰 된 아동의 양친(養親)될 사람을 국내에서 찾기 위한 시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입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의뢰된 아동의 양친을 국내에서 찾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입양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국내입양을 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양친을 찾지 못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관련 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통하여 국내입양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입양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양친이 되려는 사람을 찾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국외입양을 추진할 수 있다.

2) 「입양특례법」 제8조(국외입양의 감축) 국가는 아동에 대한 보호의무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외입양을 줄여나가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정시 시에서 25개 자치구로의 혜택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출산장려금과 같이 1회성 지원으로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출산 또는 입양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으로서의 상징적인 의미에 그칠 수 있고, 이 조례 제정에 따라 시 차원의 유사한 조례 제정(예. 출산장려금) 요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심도 있는 고려가 필요해 보임.

다. 세부 조항별 검토

1) 목적 규정 (안 제1조 관련)

- 안 제1조에서는 해외 입양 억제 및 관내 입양 촉진을 통해 요보호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에서 출생한 요보호아동의 해외 입양을 억제하고 관내 입양을 촉진시켜 요보호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입양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마련을 위해 마련된 것이기는 하나, ‘해외 입양의 억제’ 등 국외입양에 관한 사항은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소관사항이므로, 이 조례의 목적 규정에서 “요보호아동의 해외입양을 억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다음 예시 등과 같이 상위 법의 목적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책무 규정³⁾에 부합하도록 이 조례 제정의 목적을 명확히 규

3) 「입양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요보호아동의 입양(入養)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養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예시)

이 조례는 요보호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규정 (안 제2조 관련)

○ 안 제2조의 정의규정은 다음과 같음.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3. “장애아동”이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4.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5. “입양가정”이란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6.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1호의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는 법률의 한글화 및 어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운 법령 용어의 순화 차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기타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입법례에 맞추어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수정·보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제2호의 괄호의 “ “법”이라고 한다”를 “ “법”이라 한다”로,
 - 제3호의 “법 시행령”을 “ 「입양특례법 시행령」 으로 수정

3)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관련)

- 안 제3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요보호아동의 관내 입양을 촉진시켜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하며, 입양가정이 입양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안 제1조 목적규정 사항을 상당부분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점과, 상위법의 제3조(국가 등의 책무)에서는 “.. 지방자치단체는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 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부합하도록, “시장은 태어난 가정에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등과 같이 규정해 준다면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가 보다 명확해 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지원대상 (안 제5조 관련)

- 안 제5조에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안 제5조(지원대상) 서울시(이하 “시”라 한다)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으로 한정한다.

- 문장 서두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이라는 주어를 넣어주고, “서울시”는 공식명칭인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로 수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5) 지원범위 (안 제6조 관련)

- 안 제6조에서는 시장으로 하여금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축하금 및 의료비, 교통비,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안 제6조(지원범위)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축하금: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아동은 1명당 200만원
2. 입양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기존의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양육보조금 외에 의료비, 교통비, 교육비 등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
3. 그 밖에 입양아동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 이 조례안에 따라 입양가정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향후 5년간 총 65억 1,900만원 가량(연평균 약14억7,000만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⁴⁾(별첨자료 2. 예산추계서 참조).

- 앞서 언급하였듯이, **입양축하금의 경우** 서울시의 10개 자치구

4) 예산추계는 시비 100%를 지원하는 것을 기초로 산출한 것이며, 향후 5년간의 예산(65억 1,900만원) 추계는 '13년 하반기부터 적용하여 산출하고, 연평균 예산(약 14억 7,000만원)은 '14~'17년 동안의 연평균 예산을 말함. (별첨자료 1 예산추계서 참조)

에서 기 시행 중이며, 지원수준은 일반아동의 경우 1명당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 수준이며, 총 10개 자치구중 7개 자치구에서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이 조례안에 따른 지원 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짐(별첨자료3. 자치구별 입양 지원 조례 현황, 별첨자료4. 타시도 입양가정 지원 현황 참조).

- 다만, 서울시의 경우 연간 국내입양 아동수가 타시도에 비해 월등히 많다('12년 전국 1,125명 중 서울 326명)는 점에서, 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어짐(별첨자료5. 16개 시도별 입양현황 자료 참조).
- 이에 10개 자치구에서 기 지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재원부담을 자치구와 나누는 방식(예. 50% 등)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이 경우,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제7조(자치구 부담 경비의 협의)⁵⁾에 따라 자치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보조금지급대상사업의 범위 등)에 근거를 두어야 함.
- 또한, 이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이미 조례 제정을 통해 입양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는 자치구의 중복급여의 문제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한편, 서울시 차원의 국내입양 지원 현황('13년 기준)을 살펴보면, 입양아동 양육수당 27억원,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4억8천만

5)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7조(자치구 부담 경비의 협의) 시장은 자치구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사업을 신설할 때에는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원, 입양비용지원 11억원,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지원 6,300만원 등 총 44억원이 지원되고 있음(별첨자료6. 서울시 입양 관련 지원 현황 자료 참조).

- 안 제6조 제2호에서는 입양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양육보조금 이외에, 의료비 및 교통비, 교육비를 추가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의료비**의 경우, 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에 의거하여 1종 의료급여 지원대상이며, 심리(언어·재활 등)치료가 필요한 입양(가정위탁)아동은 연간 최대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입양장애아동의 경우에도 만 18세까지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 차원의 추가적 지원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가 필요해 보임.
- **교통비**의 경우에는, 가정위탁아동 등 유사 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예를들어 현재 가정위탁아동은 월 12만원의 양육보조금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시 월 3만원 수준(연간 346천원, 시비 100%)의 교통비가 지급되고 있으나, 입양가정에 기 지원되고 있는 아동양육수당은 월 15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바, 대상자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별도의 교통비 지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교육비**의 경우, 어린이집(유치원)과 초·중등학교는 무상보육 및 의무교육 기간인데 반해 고등학교 교육비는 개별적 납부

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기초생활수급자 수업료 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마련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6) 지원대상자 안내 및 지원 신청, 지원절차 (안 제8조~9조 관련)

-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입양축하금 등의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상기의 내용은 규칙 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안 제8조(지원 신청) ① 제6조의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하는 사람은 입양가정 지원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 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4. 예금통장 사본

안 제9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여부
 3.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 여부
-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양 축하금 등을 입금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전화, 우편, 문자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시행일 (부칙 관련)

- 안 부칙 제1조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부 칙

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그러나 이 조례는 입양축하금 등 예산을 수반하고 있고, 조례 공포 등 추진 일정을 감안해보더라도 향후 예산 편성 및 세부집행 계획 수립을 위한 검토 및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시행일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의견

- 요보호아동 중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아동은 입양되거나 아동양육시설에 입소 조치되나,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 측면에서 아동양육시설 입소보다는 입양이, 해외입양보다는 국내입양이 좀 더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 차원의 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한 이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긍정적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
- 다만, 이 제정안이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입양축하금 등 예산 지원을 전제로 함에 따라 시의 재정부담 능력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며, 또한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가운데 10개 자치구에서는 입양가정 지원을 위한 자체 조례를 제정하여 입양축하금 등을 이미 지원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재정부담 방식 및 중복급여 문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별첨자료 1. 연도별 입양현황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총계	2,556명	2,439명	2,475명	2,464명	1,880명
국내(전국)	1,306명 (51%)	1,314명 (54%)	1,462명 (59%)	1,548명 (63%)	1,125명 (60%)
국내(서울)	356명	332명	414명	469명	326명
국외	1,250명 (49%)	1,125명 (46%)	1,013명 (41%)	916 (37%)	755 (40%)

□ 별첨자료 2. 예산추계서 (출처: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단위: 천원)

구분	연도	산출근거(2013년기준)	2013 (6개월)	2014	2015	2016	2017	합계
		산출근거						
의원 발의 안	입양축하금	○ 일반아동 : 1,000천원 × 364명 × 0.5 = 364,000천원 ○ 장애아동 : 2,000천원 × 15명 × 0.5 = 30,000천원	197,000	411,000	428,000	446,000	464,000	1,946,000
	교통비 (중고생)	○ 345,600원/년 × 850명 × 0.5 = 146,880천원 (기초생활수급자 중고생 자녀 시비 부가급여 기준)	146,880	308,621	324,173	340,416	357,350	1,477,440
	교육비 (고등학생만)	○ 362,700원 × 425명 × 2회(분기) = 308,295천원	308,295	647,057	678,974	712,343	748,613	3,095,282
	소계 (a)		652,175	1,366,678	1,431,147	1,498,759	1,569,963	6,518,722

주1) 상기 비용추계는 조례안의 부칙사항에 따라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2017년까지 5년간을 추계 기간으로 함.

주2) 기타 각 지원내역별 근거

- 입양축하금
 - '13년 : 최근 5년간 서울시 평균 입양아동수(장애, 비장애) 기준
 - '14년 이후 : 해외입양 쿼터제에 따른 국내입양 증가율(매년 4% 증) 감산
- 교통비(중고생)
 - 지원단가 : 기초생활수급자 중고생 부가급여 기준 적용(345,600원/년)
 - 아동수 : '13년(850명), 매년 5% 증가 예상
- 교육비(고등학생)
 - 지원단가 : 기초생활수급자 고등학생 수업료 기준 적용(362,760원/분기)
 - 아동수 : '13년(425명), 매년 5% 증가 예상

□ 별첨자료 3. 자치구별 입양(축하금)지원 조례 현황

자치구	조례명	제정일	입양축하금 지원내역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축하금 지원조례	2009.7.29	입양아동 1명당 60만원 장애아동 126만원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조례	2012.3.30	입양아동 1명당 60만원 장애아동 120만원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입양장려 지원 조례	2010.9.4	아동 1명당 100만원 이내 장애아동 200만원,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축하금 지원조례	2009.12.30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장애아동 100만원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양축하금 지급조례	2011.12.30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아동 1명당 200만원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입양축하금 지원조례	2012.5.21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아동 200만원
송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양축하금 지원조례	2011.4.11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아동 200만원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입양축하금 지원조례	2011.8.1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아동 200만원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조례	2011.10.28	입양아동 100만원 장애아동 200만원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입양축하금 지원조례	2012.7.25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아동 200만원

□ 별첨자료 4. 타 시·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현황

시도명	조례명	제정일	입양축하금 등 지원내역
경상 남도	경상남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2013. 3. 28	· 입양축하금: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장애아동의 경우 200만원) · 양육수당: 법에 따른 입양양육수당 제외된 만 13세이상의 입양아동대상, 법에 따른 양육수당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하는 금액
부산 광역시	부산광역시 입양가정 지원조례	2013. 3. 20	· 입양축하금: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장애아동의 경우 200만원) · 상해보험 가입비: 12세이하 입양아동에 대하여 실비 지원
광주 광역시	광주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2012. 10. 15	· 입양축하금: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장애아동의 경우 200만원) · 국시비지원 양육수당의 교통비, 교육비, 의료비 등 추가지원

□ 별첨자료 5. 16개 시도별 입양 현황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계(국내+국외)	2,556명	2,439명	2,475명	2,464명	1,880명
국내(전국)	1,306명(51%)	1,314명(54%)	1,462명(59%)	1,548명(67%)	1,125명(60%)
서울	356명	332명	414명	469명	326
부산	111명	104명	125명	126명	109
대구	122명	109명	132명	129명	103
인천	89명	102명	113명	112명	85
광주	114명	101명	111명	110명	76
대전	67명	82명	80명	88명	59
울산	22명	17명	24명	28명	23
경기	233명	257명	254명	249명	157
강원	24명	33명	27명	30명	27
충북	19명	21명	11명	32명	45
충남	4명	6명	7명	12명	3
전북	43명	53명	53명	49명	38
전남	45명	46명	55명	52명	36
경북	7명	7명	1명	3명	3
경남	38명	39명	48명	50명	27
제주	12명	5명	7명	9명	7
국외(전국)	1,250명(49%)	1,125명(46%)	1,013명(41%)	916명(33%)	755(40%)

□ 별첨자료6. 서울시 입양 관련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2013년 예산	주요내용	지원대상	비고
입양기관운영 (시비 100%)	99,877	4개 입양기관 지원	입양기관인건비등 (홀트,동방,대한, 성가정입양원)	
일반아동양육수당 (국비40%:시비60%)	2,698,400	13세미만의 입양아 동150천원/월	일반입양아동	일반아동의 경우 의료급여 1 종의수혜(의 료급여법 제 3조제1항제 4호)
장애아동 입양보조금 (국비40%:시비60%)	476,420	양육보조금(중증 627천원,경증551 천원)및 의료비 2,600천원/년)	장애입양아동	
입양비용지원 (국비40%:시비60%)	1,088,015	입양비용을 입양기 관에 2,700천원/명	입양기관 입양비용 (수수료)	입양숙려기 간모자 지원비및 철 회비용을추 가지급 (`13년6월 부터)
치료비 (국비40%:시비60%)	63,000	월/20만원내에서 심리치료비지원	입양아동및 가정위탁아동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질의: 이 조례안은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로, 집행부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바람.
- 답변: 이 조례안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동의하며, 다만 교통비 지원의 경우 가정위탁아동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제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질의: 입양은 가정위탁 보다 더 숭고한 것으로 교통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질의: 안 제6조2호는 “입양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기존의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양육보조금 외에 의료비, 교통비, 교육비 등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등”의 표현을 삭제하여 추가지원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제6조3호의 “그 밖에 입양아동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도 너무 포괄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231
----------	------------

제안년월일 : 2013년 7월 12일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이 조례안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 규정에 대하여 상위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항에 부합하고 조례안의 입법취지가 보다 명확해지도록 보완하고, 입양가정의 지원 범위 가운데 중앙정부와의 중복지원 사항에 대하여는 삭제하는 등 서울시 차원의 추가적 지원 범위에 대하여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기타 조례안의 체계와 자구수정 등 일반적인 입법례에 맞추어 수정할 부분에 대하여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안 제1조의 목적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에 부합하도록 규정함.
- 나. 안 제3조의 시장의 책무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하고 조례안의 입법취지가 보다 명확해지도록 규정함.
- 다. 안 제6조제2호의 지원범위를 "입양아동에 대한 교육비"로 규정함.
- 라.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를 삭제함.
- 마. 안 부칙 제1조의 시행일을 "2014년 1월 1일부터"로 규정함.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에서 출생한 요보호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18세 미만의 자를”를 “18세 미만인 사람을”로 한다.

안 제2조제2호 중 “이하 “법”이라고 한다”를 “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안 제2조제3호 중 “법 시행령”을 “「입양특례법 시행령」”으로 한다.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안 제4조 중 “실시할 수 있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5조 중 “서울시”를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로 한다.

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지원범위)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축하금 :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다만,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2. 입양아동에 대한 교육비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삭제한다.

안 “제10조”는 “제7조”로 한다.

안 “제11조”는 “제8조”로 하고, 안 제11조 중 “서울시”를 “시”로 한다.

안 “제12조”는 “제9조”로 하고, 안 제12조 중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양가정 지원 등에”는 “입양가정 지원 등에”로 한다.

안 “제13조”는 “제10조”로 한다.

안 부칙 제1조 중 “공포한 날부터”를 “2014년 1월 1일부터”로 한다.

수정안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국내에서 출생한 요보호아동의 해외 입양을 억제하고 국내 입양을 촉진시켜 요보호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국내에서 출생한 요보호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정의) 생략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3. “장애아동”이란 <u>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입양아동</u> 을 말한다 4. - 6. 생략	제2조(정의) (원안과 같음) 1. <u>18세 미만인 사람을</u> 2.(이하 “법”이라 <u>한다</u>)에 3..... 「입양특례법시행령」 4.- 6. (원안과 같음)
제3조(시장의 책무) ① <u>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요보호아동의 국내 입양을 촉진시켜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하며, 입양가정이 입양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u>	제3조(시장의 책무) <u>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u>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의 조성과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 7. 생략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지원할 수 있다. 1. - 7. (원안과 같음)
제5조(지원대상) <u>서울시</u> (이하 “시”라 한다)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제5조(지원대상) <u>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u> (이하 “시”라 한다)에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으로 한정한다.
제6조(지원범위) 생략 1. <u>입양축하금 :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아동은 1명당 200만원</u> 2. <u>입양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기존의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양육보조금 외에 의료비, 교통비, 교육비 등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u> 3. 그 밖에 입양아동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제6조(지원범위) (원안과 같음) 1. <u>입양축하금 :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다만,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u> 2. <u>입양아동에 대한 교육비</u> <u><삭제></u>
제7조(지원대상자 안내) 생략	<u><삭제></u>
제8조(지원 신청) 생략	<u><삭제></u>
제9조(지원절차) 생략	<u><삭제></u>
제10조(지원금의 환수) 생략	제7조(지원금의 환수) (원안과 같음)
제11조(홍보) 시장은 입양기관과 협조하여 신문, 유선방송, <u>서울시</u> 및 입양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입양 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 등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u>시</u>
제12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양가정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입양가정 지원 등에
제13조(시행규칙) 생략	제10조(시행규칙) (원안과 같음)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u>공포한 날부터</u>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u>2014년 1월 1일부터</u>
제2조(적용례) 생략	제2조(적용례) (원안과 같음)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에서 출생한 요보호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 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3.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4.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5. “입양가정”이란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6.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의 조성과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으로 한정한다.

제6조(지원범위)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축하금 :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다만,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2. 입양아동에 대한 교육비

제7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제6조의 입양 축하금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시장은 입양기관과 협조하여 신문, 유선방송, 시 및 입양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입양 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 등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입양가정 지원을 위한 지원 신청 등에 관한 사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의 입양축하금은 입양신고일이 이 조례의 시행일 이후인 입양아동부터 적용한다.